

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과정

- 제출일자: 2023. 11. 9.
- 제출자: 대구광역시 서구청장
- 회부일자: 2023. 11. 10.
- 상정일자: 제24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12. 4.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: 기획예산실장 정기현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 시행('22.7.5.)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·이행 등(안 제3조~제5조)
- 조례 제·개정에 따른 통보 등(안 제6조)
-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(안 제7조)
- 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2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 찬 규)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지속가능발전기본법」이 2022년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, 사회, 환경을 포괄하는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.
- ※ 대구에서는 대구광역시, 군위군, 남구, 달서구, 북구, 수성구가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임.
-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
 - 안 제3조~제4조에 지속가능발전 현황, 여건 변화, 전망, 목표와 추진전략을 담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20년마다 추진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을 두었고,
 -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은 지속가능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·개정하려고 하는 때는 입법예고 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강행규정을 두었음.
 - 안 제7조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서구지속가능 지표를 개발하여야 하고, 위원회는 그 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규정을 두었음
 - 안 제8조~제9조에는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조문들 두어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

포함하여 15명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하고 임기는 2년이며, 2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규정을 두었음.

- 이 조례가 시행되면 서구의 장기발전목표 및 구정방향 등에 대한 연구, 심의, 자문을 위해 설치된 대구광역시 서구발전 위원회의 근거 조례인 「대구광역시 서구 발전위원회 운영 조례」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,
- 안 제5조에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·개정 하려 할 때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 통보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데, 어떤 내용의 조례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인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,
-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분야 외 경제성장, 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개념으로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시 우리구의 여건과 구민의 관심도를 적극 반영하여 중·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한 지표 개발과 실행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.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